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92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2. 4.

발 의 자 : 민홍철 · 강민정 · 김병기
김정호 · 서영교 · 송영길
송옥주 · 윤재갑 · 이개호
이상직 · 김민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병에 대한 징계 중 군기교육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나, 국외 작전 또는 훈련 중인 함정에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적시적인 징계를 통한 군기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,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경우 참작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행이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징계 심의대상자의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 2제2항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, 제59조의4제1항 등).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징계 사유”를 “제2항에 따라 징계권자가 적법성심사를 요청한 경우 징계 사유”로 한다.

②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종류로 군기교육을 의결한 경우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외 순방 중인 함정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9조의4제1항 중 “소행·근무성적·공적(功績)·뉘우치는”을 “혐의 당시 직책 및 계급, 비행이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, 평소 행실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위원회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시 참작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2(인권담당 군법무관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9조의2(인권담당 군법무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종류로 군기교육을 의결한 경우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외 작전 또는 훈련 중인 함정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③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<u>징계 사유</u> ,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③ ----- 제2항에 따라 징계권자가 적법성심사를 요청한 경우 징계 사유----- ----- ----- --.
④ · ⑤ (생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제59조의4(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)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행위의 경중, 심의대상자의 <u>소</u>	제59조의4(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혐의</u>

<u>행 · 근무성적 · 공적(功績) · 뉘우치는</u>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	<u>당시 직책 및 계급, 비행이 군내외에 미치는 영향, 평소 행실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--.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